2006. 3. 15(수)
제121회임시회제3차본회의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3. 7.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06. 3. 7.

○ 상 정 일 : 2006. 3. 15(제121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가. 제안이유

○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상아트홀의 정의 : 문화예술 공연장, 수상레저 기반시설로서 수경분수 바지선 형태의 무대 및 부대시설 사용이라 함은 수상아트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사용하는 것(제2조)

○ 수상아트홀의 관리 : 제천시장(제3조)

○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 변경시 7일 이전까지 신청 (제4조)

○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제6조, 7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이내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50%가산(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문화예술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 납부(제8조 제3항)

○ 위탁운영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제14조)

○ 운영비 보조 : 수상아트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제15조)

○ 수탁자의 의무 :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16조)

○ 준용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法的檢討 】

○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127조(사용료), 제130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31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등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바, 제천시 수상아트홀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용의 허가취소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으며,

○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연법 제8조 등의 관련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검토하여 볼때 수상아트홀의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법규적으로 가능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바, 수탁받은 자가 수상아트홀의 단순한 관리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2월 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行政的檢討 】

○ 본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시(2006년 1월 24일)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시 질의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수상아트홀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으로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주로 하는 문화시설로 이를 관광레포츠 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 4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로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 수상아트홀을 수상야외 결혼식장, 패션쇼, 방생장등으로 사용할 시 결혼피로연문제, 다용도로 사용할시 시간대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 난이성 문제, 공연장으로의 등록여부, 대부료 문제등 많은 논란끝에 부결되었음.

○ 따라서 (공연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수상아트홀을 결혼식장, 방생장, 패션쇼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할시 시설의 변경 또는 보강, 이용시간의 배분, 갈수기에 진입부교의 경사문제, 년중 이용시기의 한계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서 공유재산(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조례안 제8조제1항 별표 2, 별표 3등 수상아트홀 시설물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안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제3항 사용자는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후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바, 사용자가 수상아트홀의 시설물을 사용하여 이에 적합한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자로서의 부담행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 근거규정 및 타당성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전국 최초로 설치된 청풍호반의 수상아트홀이 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제천관광 수요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재정적 또는 인적부담이 있다하여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제8조제3항에 보면 "사용자는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후 입장료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와 입장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최창규 의원)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이 무한정인 것인지? (박종유 의원)

○ 제10조3항에서 시설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부 반환으로 되어 있고, 4항에 시설사용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100분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일전에만 사용신청을 취소하면 전부 반환한다는 것은 일자가 너무 짧지 않은지? 또 시설사용4일전부터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14일부터 사용전일까지 백분의 50을 반환해 주는 것은 어떤지? 제4조1항에 신청에 대하여 불허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의가 있을 때면서 그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에게 불허통보를 며칠 안으로 해줘야 되는 날짜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원인이 명확하면 며칠 내로 바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은 아닌지? (김성진 의원)

○ 제17조4항에 보면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문은 삭제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김남원 의원)

나. 답변요지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 사용료를 선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설사용요률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예술 공연시 입장료를 규정한 것은 유료공연을 염두에 둔 사항임. 입장료가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입장료수입에 대한 일정부분을 제천시에 수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임.

○ 연장도 기본적으로 3년 이내임. 다시 3년하고 다시 할 때는 3년까지 밖에 안해 주며, 재협약을 해야 함.

○ 사용료반환문제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사용신청이 되지 않고 수시사용 신청이 되는 것이 있으며, 수사용 신청의 경우 에는 7일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5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함. 7일 이내에 신청했다가도 취소되는 경우에는 5일전에 다시 취하하는 사항이면 감면해 주고 5일이내에 해당일자까지는 되는 것은 백분의 50감면해 주는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 되겠음.

이의신청결정이 되면 민원인에게는 조속히 통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됨.

○ 수탁계약을 맺는데 1-2년운영을 하다가 능력이 없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부. 끝.